

1. 개정이유

「악취방지법」이 개정('26.7.7., 시행 '27.1.8.)됨에 따라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을 활용한 보고 및 정보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악취검사기관 기술 인력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악취실태조사 결과 전산망 보고 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 전산망을 통해 보고가 가능하도록 함

나. 악취 민원 결과 전산 보고 근거 마련(안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 민원 또는 조치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 전산망을 통해서도 보고가 가능하도록 함

다.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갈음 규정 삭제(안 제9조제2항)

1) 현행 규정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 시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제출 갈음 가능

2)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의 첨부서류인 악취물질의 종류·농도 및 발생량 예측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및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가 검토되지 않으므로 동 규정 삭제

라. 악취검사기관 대표자, 기술인력 변경 시 변경보고(안 제16조)

현행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과학원 예규 제824호)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악취검사기관 변경보고 기준을 시행 규칙에 반영

마.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9조의2제1항)

중소기업이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 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첨부서류 제출 생략
바. 수세 후 건조시설 악취배출시설에서 제외(별표2)

금속 표면처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중 수세 후 건조시설 악취배출시설에서 제외

사. 악취검사기관 기술인력 기준 정비(별표7)

- 1) 기술인력을 업무분야로 구분하고 세부 자격기준은 비고에 명시
-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대기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7조의2에 따른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7조의2에 따른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리하거나 제2항에 따른 통
보를 받았”을 “수리하였”으로 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실험실”을 “사업장
또는 실험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대표자

4. 기술인력(기술책임자, 악취분석요원에 한함)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별표 2 제34호3) 중 “시설”을 “시설(수세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악취실태조사) ①·② (생략)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실태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생략)	제4조(악취실태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다만, 법 제17조의2에 따른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조(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 ----- ----- ----- ----- ----- ----- ----- 다만, 법 제17조의2에 따른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9조(악취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악취배	제9조(악취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출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
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
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
44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
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의 제출로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허가를 하거나 신
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관할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
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
고를 수리하거나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
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악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보고) 악취검사기관으로 지
정받은 자가 법 제18조제3항에

② -----

----- 수리하였 -----

제16조(악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보고) -----

따라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와 악취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사업장 소재지
3. 실험실 소재지
- <신설>

제19조의2(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①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이하 “악취저감기술 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대표자
3. 사업장 또는 실험실 -----
4. 기술인력(기술책임자, 악취분석요원에 한함)

제19조의2(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영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단서 신설>

②·③ (생략)

별표 2 제34호3)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3m³ 이상인 금속표면처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별표 7

기술인력	검사시설 및 장비
대기환경기사 1명 악취분석요원 1명 악취판정요원 5명	1. ~ 6. (생략)

비고

1. 대기환경기사는 다음의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

----.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별표 2 제34호3)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3m³ 이상인 금속표면처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수세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7

기술인력	검사시설 및 장비
기술책임자 1명 악취분석요원 1명 악취판정요원 5명	1. ~ 6. (현행과 같음)

비고

1. 기술책임자는 다음의 사람으로 한다.

<u><신 설></u> <u>가.</u>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직공무원으로서 대기환경연구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u>나.</u>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대기환경분야를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u>다.</u>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대기환경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같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u>라.</u> 대기환경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약취검사기관에서 약취분석요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u><신 설></u> 2. 약취분석요원은 다음의 사람으로 한다. 가. ~ 다. (생략) 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u>대기환경측정분석 분야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u> 3. (생략) <u><신 설></u> 4. 여러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5. 지정약취물질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임차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u>가.</u>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u>나.</u>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직공무원으로서 대기환경연구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u>다.</u>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대기환경분야를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u>라.</u>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대기환경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같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u>마.</u> 대기환경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약취검사기관에서 약취분석요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u>바.</u>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u>대기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u> 2. 약취분석요원은 다음의 사람으로 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u>대기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u> 3. (현행과 같음)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1의3에 따라 기술인력(기술책임자 및 약취분석요원으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은 <u>대기환경측정분석사로 해야 한다.</u> 5. 여러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6. 지정약취물질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임차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	--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기술인력	검사시설 및 장비
기술책임자 1명 악취분석요원 1명 악취판정요원 5명	1. 공기희석관능 실험실 2. 지정악취물질 실험실 3. 무취공기 제조장비 1벌 4. 악취희석장비 1벌 5. 악취농축장비(필요한 측정·분석장비별) 1벌 6. 지정악취물질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각 1벌

비고

- 기술책임자는 다음의 사람으로 한다.
 -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직공무원으로서 대기환경연구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대기환경분야를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대기환경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같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대기환경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악취검사기관에서 악취분석요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대기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악취분석요원은 다음의 사람으로 한다.
 - 대기환경기사, 화학분석기능사, 환경기능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국공립연구기관의 대기분야 실험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에서 악취분석요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대기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악취판정요원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악취판정요원 선정검사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1의3에 따라 기술인력(기술책임자 및 악취분석요원으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은 대기환경측정분석사로 해야 한다.

-
5. 여러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6. 지정악취물질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임차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사업장 명칭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부서 및 담당자	담당자 E-mail	
신청 내용	업 종		종업원 수
	주요 생산품		주요 생산 공정
	주요 악취배출공정		
	악취방지시설 종류		
	기술지원 희망일자		
	기술지원 요청사항 (악취관련 문제시설 요약 등 가능한 상세히 기술)		

「악취방지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기술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工程圖) 2.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영 제8조의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수수료 없음
------	---	-----------

